우리조합은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으로 출발하여, 이제 “**한국영상보안산업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더 큰 미래를 향한 도약을 시작합니다.

KVIC 한국영상보안산업협동조합

우편번호12918 /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16, 제7층 F701호(풍산동,하우스디스마트밸리) www.cctv.or.kr

전무이사 백치순 / 부장 채희진 / 전화 : 02)454-5114 팩스 : 02)454-5359 이메일 : cctv@cctv.or.kr

문서번호 : 한국영상보안 제26-185호

시행일자 : 2026. 10. 23.

수 신 : 조합원사 대표이사

참 조 : 관리업무담당부서장

선 람		지 시		
접수 일자	. .	결재·공람		
접수 번호				
처리부서				
담 당 자				

제 목 :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 안내(사업주 지원)**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제도 및 일·가정 양립 제도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대체인력 인건비, 업무분담자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지원이 있으신 경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 >

①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부여시 첫 3개월 월 100만원, 이후 월 30만원

** (남성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 육아휴직 1~3번째 사례에 대해서는 월 40만원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사업장 최초 1~3번째 사례 월 40만원)

③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 또는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제도 사용 전 인수인계 최대 2개월, 육아휴직 복직 후 인수인계기간 최대 1개월 포함)

*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원, (육아기 단축) 월 최대 120만원

** 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한 중복 지원이 제한됨(육아휴직 일반지원금, 남성 인센티브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과 중복 가능)

④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60만원***

*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원, (육아기 단축) 월 최대 20만원

※지원요건 및 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요
2.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안내문
3. 인재채움뱅크 사업 안내

※붙임문서는 조합홈페이지(www.cctv.or.kr)-알림마당-공지사항 게시물 참조. 끝.

한국영상보안산업협동조합이사장